총포 등 기술지원

업무규정

(601)

총포 등 기술지원 업무규정

목 차

제1조(목 적)

제2조(적용범위)

제3조(기술지원의 종류)

제4조(기술지원 방법)

제5조(신청)

제6조(처리기간)

제7조(민원예방)

제8조(기술지원비)

부 칙

총포 등 기술지원 업무규정

2001. 1.27 제정
2001. 2.14 개정
2004.11.18 개정
2015.12.29 개정
2016. 8. 1 개정
2017. 6. 1 개정
2017.11. 1 개정
2019. 7. 8 개정
2021.12.21 개정
2021.12.21 개정
2024.12.19 개정
2026.10.26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총포.도검.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2조 및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.분사기.전자충격기.석궁 등의 기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06.8.1)

제2조(적용범위) 총포.분사기.전자충격기.석궁 등의 제조,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자,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총포.분사기.전자충격기.석궁.사격장 등에 관한 기술지원

제3조(기술지원의 종류) 기술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①설계도면 기술지원

②제조.판매.수리.임대.사격장 등의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(개정 2016.8.1)

③제품의 성능에 대한 기술지원

④모의총포에 대한 기술지원

⑤기술자문

⑥기타

제4조(기술지원 방법) 신청하는 모든 총포.분사기.전자충격기.석궁.사격장 등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다.

① 기술지원 및 시험의 결과는 의뢰인이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1의 시험성적서로 할 수 있다.(개정 2004.11.18)

② 협회 및 외부의 시험장비를 이용한다.

③ 법에 명시된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고, 의뢰자가 요청한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.

④ 기타

제5조(신청)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류별 해당 별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관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19.7.8)

제6조(처리기간) 기술지원 업무의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.

① 설계도면 기술지원 : 12일 (개정 2004.11.18, 2017.6.1)

② 제조.판매.수리.임대.사격장 등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: 12일
(개정 2004.11.18, 2016.8.1, 2017.6.1)

③ 모의총포에 대한 기술지원 : 12일 (개정 2004.11.18, 2017.6.1)

④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: 12일(개정 2017.6.1)

* 기간은 기술지원비 입금일자로부터 계산하나, 보완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사항이 처리된 날로부터 한다.(개정 2004.11.18)

제7조(민원예방)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,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8조(기술지원비) ① 정관 제33조 제3호에 의거 기술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.(개정 2004.11.18, 2018.7.1, 2021.12.21)

② 기술지원비는 다음과 같다.

1. 설계도면 기술지원(개정 2015.12.29)

가. 총포・분사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 : 45만원

나. 총포 등의 부품 및 납탄 : 15만원

2. 제품 성능에 대한 기술지원(개정 2004.11.18,2015.12.29, 2021.12.21)

가. 총포・분사기・전자충격기・석궁 : 45만원

나. 총포 등의 부품

・영업용(국가기관 포함) : 20만원

・개인용 : 5만원

3.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(개정 2015.12.29, 2016.8.1)

가. 제조업소 : 75만원

나. 판매.수리업소 : 35만원

다. 임대업소 : 35만원

라. 사격장 : 45만원/종목당

4. 모의총포에 대한 기술지원(개정 2015.12.29, 2021.12.21)

가. 영업용(국가기관 포함) : 35만원/정

나. 개인용 : 5만원/정(단 개인용 저가 제품일 경우 5만원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.)

5. 회원이 아닌 자의 제조·수입품 안전검사는 법정수수료 외 회원의 회비(생산자 공급가격 또는 수입원가의 100분의 1)에 상당하는 비용(신설 2021.12.21)

③ 기술지원비는 신청 시 협회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(개정 2021.12.21)

④ 기술지원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⑤ 기술지원 결과보고서(시험성적서)는 1부를 작성하며, 의뢰자가 추가작성 요청 시에는 1부에 1만원을 받을 수 있다.(신설 2004.11.18.)

⑥ 검사비용이 검사수수료를 초과할 경우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른 실비정산을 한다.(신설 2026.10.26.)

부 칙(2001. 1. 27)

① 이 규정은 200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이 시행되면 다음의 조항 및 규정은 자동 폐기된다.

1. 총포 등 검사업무 규정 제3조 제1항, 제5조 1항, 제5조의2 제1항, 제5조의3 제1항, 제5조의4 제1항, 제12조 제1항 제4호, 제5호.

2. 총포 등 제조.수리.판매업소 완성검사 업무규정

3.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업무규정

③ 명시되지 않은 기술지원비는 제반비용을 계산하여 징수한다.

부 칙(2001. 2. 14)

① 이 규정은 200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 11. 18)

①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2. 29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시기) 제8조(기술지원비)제2항은 2016. 3. 1.이후 접수하는 기술지원 신청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6. 8. 1)

①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6. 1)

①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11. 1)

①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7. 1)

①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7. 8)

①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12. 21)

①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 12. 19.)

①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6. 10. 26.)

①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(개정 2017.11.1)

우0416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길 50(용강동) / Tel(02)3272-4102/Fax(02)3272-4101

시험(검사)성적서

접수번호 :

의뢰기관 :

업 체 명 :

대 표 자 :

주　　소 :

품　　목 :

시험(검사)결과

용　　도 :

비　　고 : 이 시험성적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함.

시험(검사)자 :

년　　월　　일

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 사 장

(210㎜×297㎜)

(별지 1)

[04162] 50, Mapo-daero 1-gil, Mapo-gu, Seoul, Republic of Korea / Tel(02)3272-4102/Fax(02)3272-4101

Test Report

Receipt No :

Company :

Address :

Commodity :

Test Result

Use :

Note :

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commodities has been in the request test

. . .

Guns & Explosives Safety Technology Association

Chief Director

(210㎜×297㎜)

(별지 제2호 서식)(신설 2019.7.8., 개정 2024.12.19.)

□ 기술검토 □ 안전진단 신청서	선결			지시		
	접수	일자		결재·공람		
		번호				
	처리부서		총포안전처			
	담 당 자					

① 신 청 인	성 명/ 회사명	(Tel: Fax:)
	주 소	(우편번호:)
② 시설의 종류		
③ 허 가 사 항		
④ 기 타		

* 위와 같이 시설(제조, 수리, 판매, 임대, 사격장)의 □ 기술검토 □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㊞

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사장 귀하

※ 구비 서류
1. 허가증 1부
2. 기술지원비 입금 확인서 1부
가. 계좌은행 : 하 나 은 행
나. 계좌번호 : 168 - 910004 - 02804
다. 계 좌 명 :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
라. 수 수 료 : 제조업소[825,000원(부가세 포함)], 수리, 판매, 임대업소[385,000원(부가세 포함)]
사격장[종목당 495,000원(부가세 포함)]

* 홈페이지 WWW.GESTA.OR.KR
TEL : 02-3272-4102
FAX : 02-3272-4101
E-mail : gun@gesta.or.kr

(별지 제2호 서식)(신설 2019.7.8., 개정 2024.12.19.)

<table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5">성능 검사 신청서</td><td>선결</td><td></td><td></td><td>지시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접수</td><td>일자</td><td></td><td rowspan="4">결재·공람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번호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처리부서</td><td>총포안전처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담 당 자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① 신 청 인</td><td>성 명/
회사명</td><td colspan="5">(Tel: Fax:)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5">(우편번호:)</td></tr>
<tr><td>② 제 목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③ 종 류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④ 용 도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>⑤ 기 타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/table>

* 위와 같이 성능 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㊞

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사장 귀하

※ 구비 서류
1. 검사항목 1부
2. 기술지원비 입금 확인서 1부
가. 계좌은행 : 하 나 은 행
나. 계좌번호 : 168-910004-02804
다. 계 좌 명 :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
라. 수 수 료 : 495,000원(부가세 포함)

*홈페이지 : www.gesta.or.kr
TEL : 02-3272-4102
FAX : 02-3272-4101
E-mail : gun@gesta.or.kr